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의 근거 마련 등〉

■ 김종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593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
교통안전 관련 주요지수 비교	5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종양의원 등 13인
2. 제 안 일 : 2024. 09. 12.
3. 회 부 일 : 2024. 09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.

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.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의2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·조사·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의2 신설 및 제147조제7항)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44조의2(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) ①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(이하 “교통안전지표”라 한다)를 개발·조사·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.</u> <u>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7조(위임 및 위탁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경찰청장은 제1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의 개발·조사·산출·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
교통안전지표란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안전도 수준을 비교·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안전사업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교통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 도로교통공단에서 2005년부터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산출·발표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교통안전지표가 그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시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표를 개발·조사·작성하도록 하고, 시장등이 교통정책을 수립 시 해당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표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¹⁾

다만, 현재 교통, 재난과 관련된 다수의 지수가 개발되어 산출·활용되고 있으므로, 해당 지수 간 구별이 명확하고 그 활용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체계적 관리·운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.²⁾

1) 경찰청도 현재 산출·공표하고 있는 교통안전지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.

2) 국내 교통안전 관련 주요 지수간 개발 비교 참조(참고자료)

문 의 처
02)6788-5344

<참고자료> 교통안전 관련 주요지수 비교

구분	교통안전지수	지역안전지수	교통문화지수
작성 주체	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	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	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
법적 근거	없음	재난안전법 제66조의10 (지역안전지수의 공표)	교통안전법 57조, 시행령 48조 (교통문화지수의 조사)
개 시	2005년	2003년	2015년
정의	사고발생정도를 평가 (사고를 심각도별 반영)	사망자수, 재난약자수, 의료기관수 등으로 안전도를 평가	교통문화수준 평가 (운전보행행태 설문관측조사)
목적	안전사업 경쟁촉진, 안전정책 수립지원, 교통 안전도 제고	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및 자율적 개선 유도	선진교통문화 정착 시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
평가 항목	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공통적으로 활용하나 세부 방식에 차이가 있음		
	○ 사망자, 부상자 수 ○ 인구수, 도로 연장	○ 인구 만 명당 사망자 수	○ 사망자, 보행사망자, 사업용 자동차 사고 사망자 ○ 인구수, 도로 연장
구별 항목	○ 피해자 유형·사고 시 상태· 차종 등 사고 정보를 18 개 지표로 구분	○ 지자체 교통 여건 및 인 프라를 측정 지표로 선정	○ 운전자·보행자 행태 및 지자체 노력도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 ○ 현장조사, 설문·문헌조사 등 정성적 조사
한계점	○ 사상자 수만을 고려, 전체 적인 안전 수준을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려움 ○ 교통 인프라·노력도·인적 요인 등 미반영 ○ 사고 발생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 제공이 어려움	○ 안전지수와 교통사고 사 망자 상관관계 불일치 ○ 교통 인프라가 발달된 수 도권 지역은 지수가 높고, 도 지역은 낮음 ○ 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진 다고 보기 어려움	○ 주관적인 조사 방식으로 객관성·신뢰성 저하 ○ 문화지수와 교통사고간 상관관계 불일치